

보도참고자료 | PRESS REFERENCE

한미약품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제안

라이프자산운용

한미약품 (128940 · KOSPI) | 2026년 9월

목차

CONTENTS

I

제안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결의·직접 수행·주주 보고

II

내부통제

자회사 감독 소홀·내부통제 부실·룬메이캉 매출채권 급증

III

계약구조

우선검토권·일방적 해지 불가

IV

감사위원회

자회사 조사 근거·대표이사 감사 근거

본 자료에 관하여

- 본 자료는 북경한미-룬메이캉 거래관계에 관한 언론 및 시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 모든 수치와 사실관계는 **1차 자료**(원문 공시·상장신청서)에서 인용·산출하였으며, 추정이 포함된 경우 근거와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특정 주주나 진영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으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출처

-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COREE Company Limited, Application Proof (홍콩거래소 상장신청서, 2026.06.30)
- 한미약품 입장문 (2026.07.29)



제안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결의·직접 수행·주주 보고

감사위원회는 지금 특별감사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약품 감사위원회는 북경한미—룬메이캉 거래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위원회 명의로 결의·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주주에게 공개 보고해야 합니다."

- 1 지배구조 문제와 내부통제 부실** 모회사 한미약품이 자회사 북경한미 감독을 소홀히 한 지배구조 문제
— 견제 없이 북경한미 동사장(이사회 의장)이 실소유주인 룬메이캉과 거래하는 내부통제 부실 촉발
- 2 매출채권 급증과 대손충당금 미반영** 룬메이캉 매출채권 급증 · 대손충당금 매년 0원
- 3 비대칭적 계약구조** 우선검토권 및 일방적 해지 불가 조항
- 4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필요성** 경영진 입장문 — 지배구조 문제 인식 및 해소 의지 결여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에 북경한미 채권 논의 부재
- 5 조사 권한 보유** 상법·정관·감사위원회 규정 — 자회사 조사 근거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 감사 근거 적시



내부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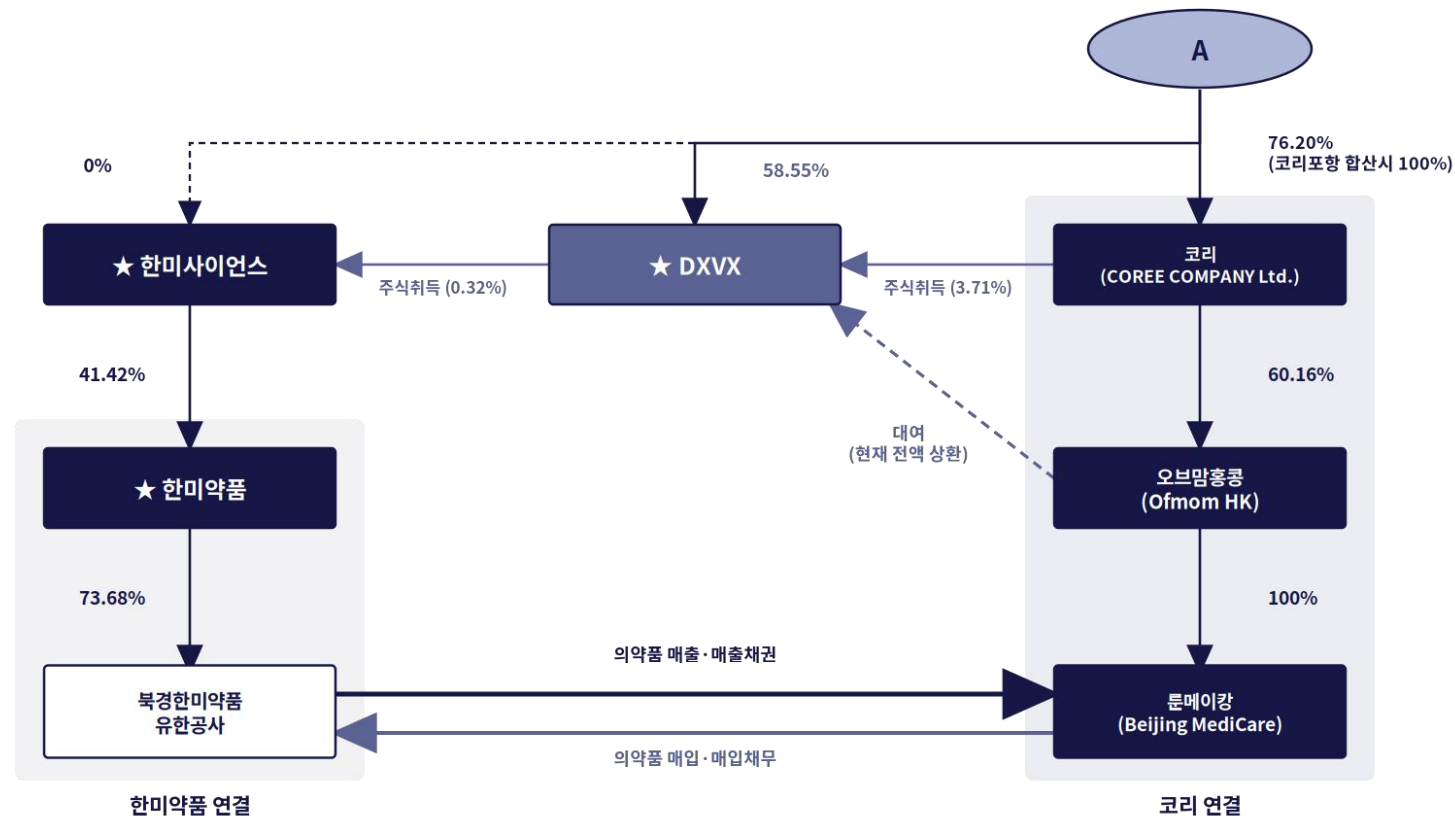
자회사 감독 소홀·내부통제 부실·룬메이캉 매출채권 급증

II. 내부통제

지배구조 문제가 촉발한 내부통제 부실

모회사 한미약품이 자회사 북경한미 감독을 소홀히 한 지배구조 문제

— 견제 없이 북경한미 동사장(이사회 의장)이 실소유자인 룬메이캉과 거래하는 내부통제 부실 촉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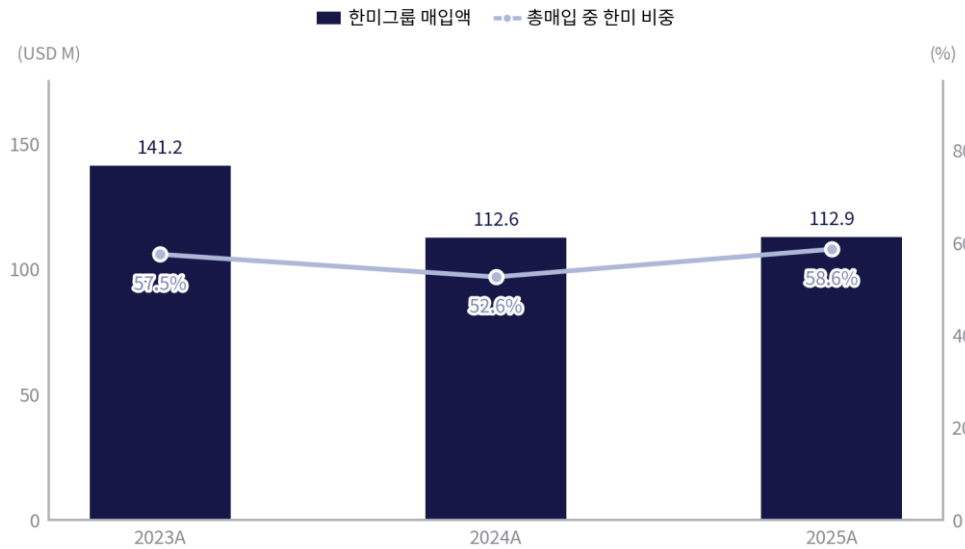


II. 내부통제

북경한미 없이 룬메이캉 성립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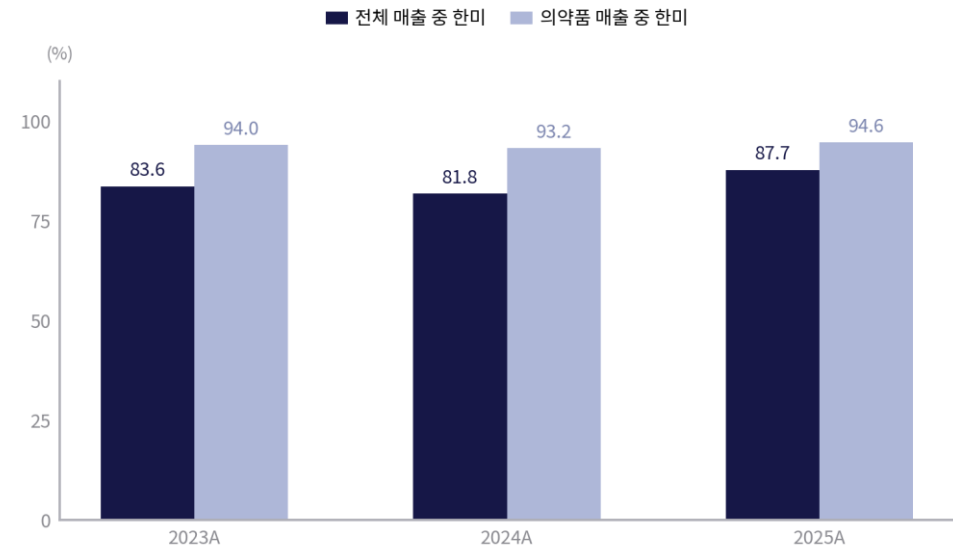
코리(룬메이캉)의 매입·매출이 모두 한미그룹에 크게 의존

매입: 전체 매입의 58.6%가 한미그룹으로부터 발생



*코리(COREE) 연결 기준 · 룬메이캉은 코리 연결 자회사. 출처: COREE Application Proof(2026.06.30)

매출: 전체 매출 87.7% · 의약품 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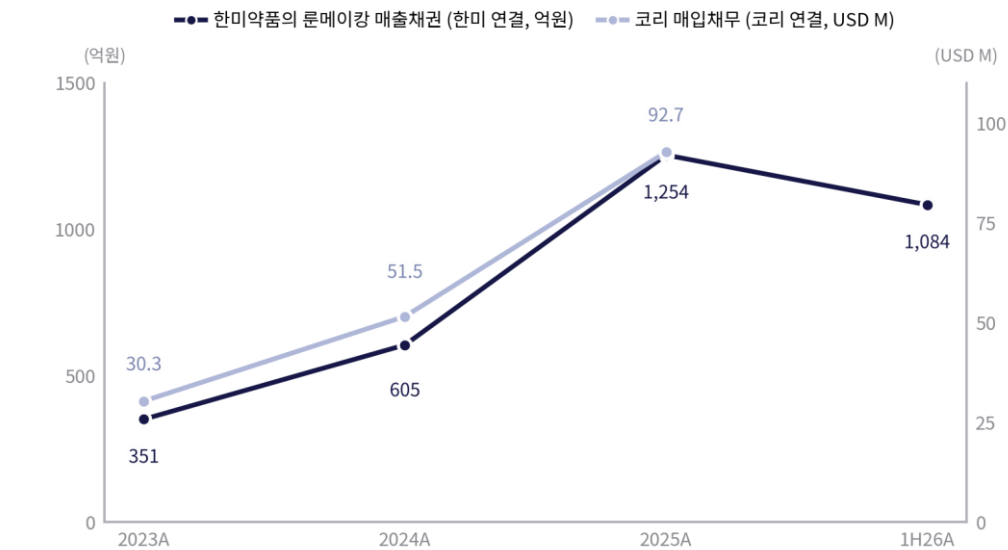
*코리(COREE) 연결 기준 · 룬메이캉은 코리 연결 자회사. 출처: COREE Application Proof(2026.06.30)

II. 내부통제

룬메이캉 판매대금 회수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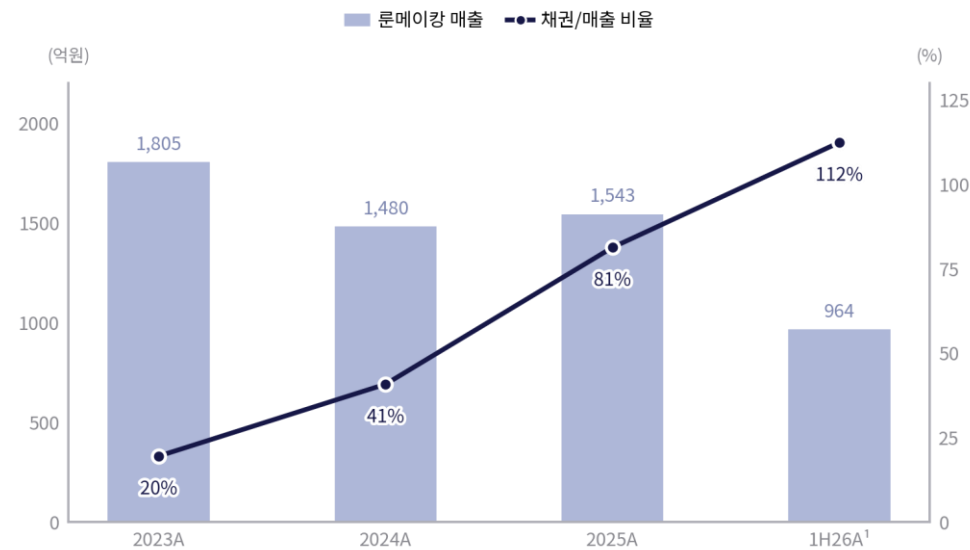
매출채권 2년 만에 3.6배로 급증 · 회수 지연 심화

룬메이캉 매출채권 급증 (대손충당금 0원)



*매출채권=한미약품 연결 기준 · 매입채무=코리(COREE) 연결 기준. 출처: 한미약품 반기보고서(2026.08.14); COREE Application Proof(2026.06.30)

회수 속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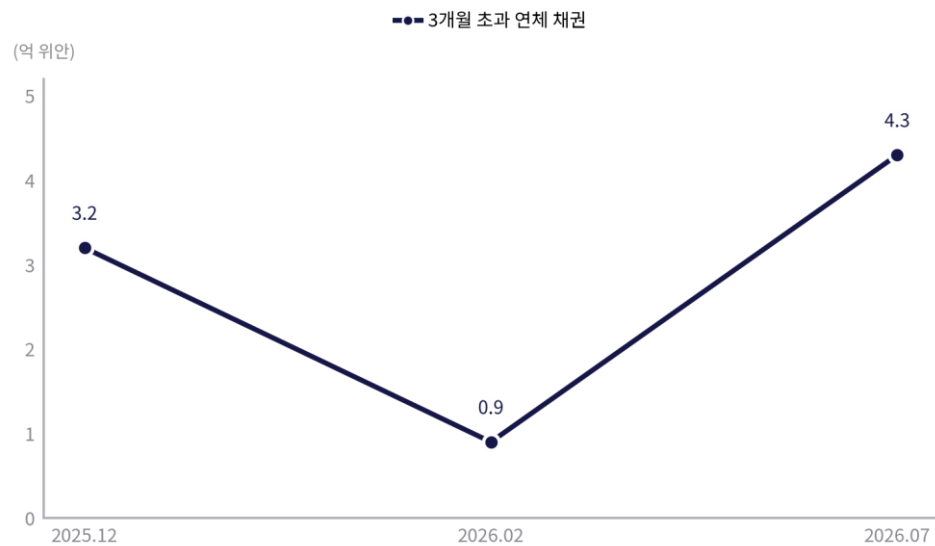
*한미약품 연결 기준 · ¹1H26은 반기실적 연율화(×2). 출처: 한미약품 반기보고서(2026.08.14)

II. 내부통제

길어지는 미회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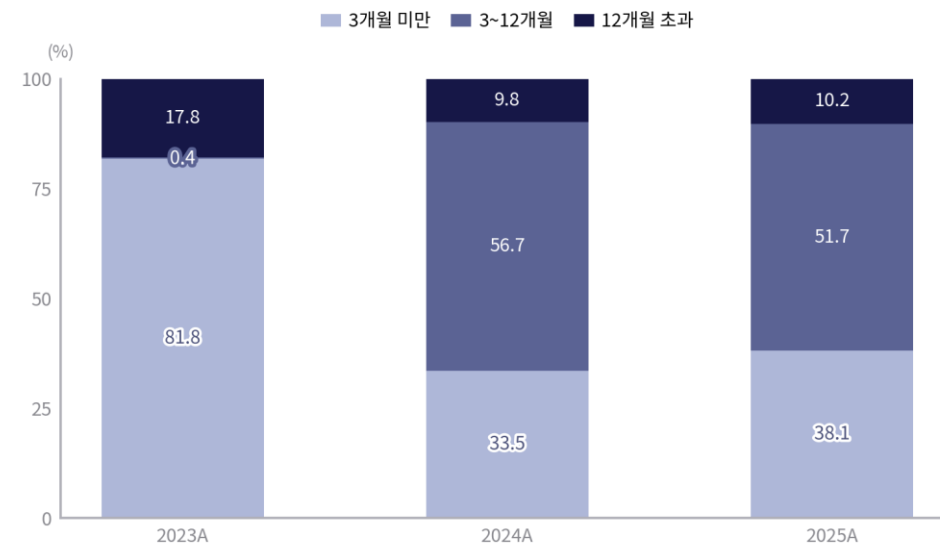
북경한미—코리 양측 장부에서 확인되는 연체 장기화

북경한미 3개월 초과 연체 증가 — 매출채권 질 악화



*회사는 연중 증가·연초 회수의 계절적 패턴이라 설명. 북경한미 별도 기준. 출처: 한미약품 입장문(2026.07.29)

코리 매입채무도 중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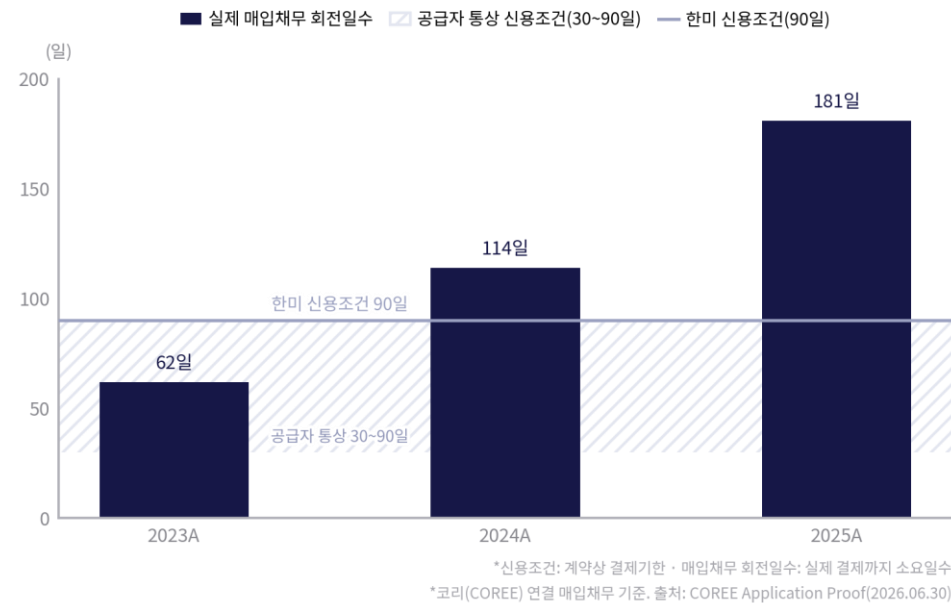
*코리(COREE) 연결 매입채무 기준 · 원문 금액을 총액 대비 비율로 산출. 출처: COREE Application Proof(2026.06.30)

II. 내부통제

커지는 룬메이캉 리스크

코리 매입채무 회전일수 급증 · 한미약품 전체 매출채권의 1/3이 룬메이캉

미뤄지는 대금 결제



커지는 룬메이캉 매출채권 비중

구분 (KRW B)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1H26A
전체 매출채권	227	184	186	248	349	312
룬메이캉 매출채권	28	35	35	60	125	108
룬메이캉 비중	12%	19%	19%	24%	36%	35%

*한미약품 연결 기준, 출처: 한미약품 반기보고서(2026.08.14)



계약구조

우선검토권·일방적 해지 불가

III. 계약구조

북경한미에 불리한 계약구조

코리 상장신청서에서 드러나는 계약조건의 비대칭

우선검토권

First Offer Right

한미그룹이 새로운 유통 조건을 다른 유통사보다 코리에게 먼저 제시
해야 하고, 코리가 그 조건을 우선적으로 수락할 권리를 가짐

*"Hanmi Group shall **first offer any new distribution terms and conditions to us** before engaging with other distributors, ensuring that we have **the priority to accept** such terms and conditions."*

일방적 해지 불가

No Unilateral Termination

전략적 협력 계약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일방 해
지권을 부여하지 않음

*"The Strategic Cooperation Agreement **will remain effective on a continuing basis and does not grant either party a general unilateral termination right** exercisable by giving notice for a fixed notice period."*

출처: COREE Company Limited, Application Proof (2026.06.30)

IV

감사위원회

자회사 조사 근거·대표이사 감사 근거

IV. 감사위원회

한미약품 경영진과 독립된 감사위원

한미약품	성명	최초선임	최근선임	재선임여부	임기만료	배경
사내이사 (대표이사)	황상연	2026.03	2026.03	신규선임	2029.03	한미약품 총괄 사장
사내이사	임종훈	2024.06	2024.06	신규선임	2027.06	한미약품 그룹지원 사장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사내이사	최인영	2025.03	2025.03	신규선임	2028.03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전무
사내이사	김나영	2026.03	2026.03	신규선임	2029.03	한미약품 혁신성장부문 전무
독립이사	김태윤	2023.03	2026.03	재선임	2029.03	감사위원(감사위원장)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독립이사	이영구	2025.03	2025.03	신규선임	2028.03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독립이사	한태준	2026.03	2026.03	신규선임	2029.03	켄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총장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2024.06	2024.06	신규선임	2027.06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 한양정밀 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김재교	2025.03	2025.03	신규선임	2028.03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총괄 부회장

※ 채이배 전 한미약품 독립이사(감사위원)는 2026년 7월 10일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

출처: 한미약품 반기보고서(2026.08.14)

IV.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조사·감사 근거

상법·정관·감사위원회 규정에 조사 권한 명시

자회사(북경한미) 조사

상법 제412조의5 —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업무·재산상태 조사 (정당 이유 없이 거부 불가)

정관 제45조⑥ —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조사 가능

규정 제6조②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업무·재산상태 조사

대표이사 직무집행 감사

상법 제412조 — 이사(대표이사 포함) 직무집행 감사

정관 제39조 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
제45조① 회계·업무 감사

규정 제6조① 이사 직무집행 감사
제20조 부정행위 발생 시 직접 조사

결론

감사위원회가 지금 나서야 합니다

- 한미약품이 자회사(북경한미)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견제 없이 북경한미 동사장(이사회 의장)이 실소유주인 룬메이캉과 거래하는 내부통제 부실이 촉발되었습니다.
- 북경한미에 불리한 비대칭적인 계약조건이 체결되었고, 판매대금은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경영진과 독립된 감사위원회는 상법·정관·감사위원회 규정상 조사 권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명의로 특별감사를 결의·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주주에게 공개 보고할 것을 제안합니다.